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공고 제2026 - 53호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청년인턴 채용 공고

고용노동부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5일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

1. 채용 분야 및 담당업무

가. 채용 분야

지원코드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청년인턴	고용분야	총 2명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및 관할 소속기관내 고용센터* 또는 고용관련부서 * 안양고용센터(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 업무분장에 따라 군포고용센터로 배치·근무 할 수 있음> (군포시 군포로 522) * 광명고용센터(광명시 시청로 15)

나. 주요 업무내용

지원코드	채용분야	담당업무
청년인턴	고용분야	- 다양한 국정경험 기회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 정책 전반과 관련하여 공동업무, 현장활동 지원 등 업무 수행 - 고용센터 사업 홍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모니터링,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취업지원 업무 등 지원, 실업급여 교육 및 신청서 작성 지원 등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①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만 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 이상 : 3세 연장

② (학력, 전공, 성별) 무관

③ 아래 응시 제한 사유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원하려는 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참여 횟수(2회)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 ※ 단, '23~'24년에 2회 이상 참여한 자 중 합산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1회 참여 기회 추가 부여
 - ※ 참여횟수 확인을 위해 기존 참여 이력을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누락·허위 작성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 고용보험 이력 중 '중앙부처 청년인턴 제도' 외의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인 경우
-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우대요건

- (대상)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 (가점) 각 전형 단계별 3~10점

※ 우대사항 적용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허위 기재 시 합격 취소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 또는 10%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제출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가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관련 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 심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 기준: 청년인턴 지원서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정책제안서’를 제출받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정책제안서 주제는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

* 우리부 주요 추진사업과 제도를 정리한 ‘26년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참조
<별도 첨부>

※ 정책제안서는 별도 제출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면접에서 불리할 수 있음

4. 시험 일정

가. 시험공고: 2026. 8. 5.(수) ~ 8. 14.(금)

나. 원서접수: 2026. 8. 12.(수) 09:00 ~ **8. 14.(금) 18:00**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2026. 8. 20.(목)

라. 서류전형 합격자 **정책제안서** 및 증빙서류 제출: 2026. 8. 20.(목) ~ 8. 21.(금) 18:00

마. 면접시험일: 2026. 8. 25.(화)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바. 최종 합격자 발표일: 2026. 8. 27.(목)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홈페이지, 청년인재DB(www.2030db.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 취소,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 면접시험 평정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2026. 8. 12.(수) 09:00 ~ 2026. 8. 14.(금) 18:00
- (접수방법) 청년인재DB 내 '청년인턴 채용' 공고에서 신청

※ 신청 전 [청년인재DB\(www.2030db.go.kr\)](http://www.2030db.go.kr) 회원가입 필요

나. 제출 서류

- 응시원서<서식1>, 청년인턴 지원서<서식2>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동의서 1부(서명 포함) <서식3>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부

※ [참고]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온라인 발급 방법' 참조

- 정책제안서 1부(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면접전형 전에 제출)
- 응시자격 확인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면접전형 전에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제출하는 증빙서류 >

각종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필수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가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관련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6. 근무조건

가.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2026. 9. 1. ~ 2026. 12. 31. (총 4개월)

다. (보 수) 월 2,156,880원(정액급식비 160,000원 포함)

라.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마.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7. 유의 사항

-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지역협력과 (☎ 031-463-73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1. 지원 분야					
응시번호		지원코드	청년인턴	채용분야	고용분야
2. 인 적 사 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도로명)	(우)				
휴대전화			이메일		
3. 가산요건					
※ 아래의 내용 중 해당사항에 ☒ 표기 하십시오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기준 해당자					
☐ 그 외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2년이상),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2년이상),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4. 희망부서					
1순위		2순위		3순위	
4.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근무 이력					
중앙행정기관명	실제 근무지	근무기간		합산 기간	
예 : 산림청	국립수목원	2025.3.4.~2025.8.31		6개월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1. 「응시번호」 란은 응시자가 기재하면 안 됩니다.
2. 가산요건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 ① **응시코드** :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② **지원코드 및 채용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와 채용분야 기재
(예) 지원코드 : 청년인턴 채용분야 : 고용분야
- ③ **성명, 생년월일, 성별** :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
(예) 성명 : 홍길동 생년월일 : 2001.10.15.
-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⑤ **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⑥ **가산요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해당란에 ✓ 표시
※ 가산요건 대상자는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 전 증빙자료 필수 제출
(별도 안내 예정)
- ⑦ **희망부서** : 안양지청 소속 고용센터(안양·군포·광명·의왕) 중 희망순위 기재
- ⑧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근무 이력** : '23년부터 현재까지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작성(참여 기간은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상 취득일~상실일 기준으로 산정)

청년인턴 지원서

응시번호		지원코드	청년인턴	채용분야	고용분야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 해당 기관 및 직무에 지원하게 된 계기
- 향후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 인턴 경험이 진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서술

◎ 직무 관련 전문성 획득을 위한 활동 내용

- 지원한 분야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활동 및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서술
- 출신학교, 자격증, 시험(어학 등) 성적 등은 언급하지 말고 행동과 경험 중심으로 작성

◎ 문제 해결 경험

- 일상생활, 학교, 아르바이트, 동아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했던 경험 서술
-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와 그 결과가 어땠는지 중심으로 서술

◎ 소통 및 협업 능력

- 타인과 협력하여 성과를 낸 경험 서술

◎ 기대하는 점 및 각오

- 인턴ships을 통해 배우고 싶은 점과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서술

○ 청년인턴 지원서 작성요령

- 응시번호는 미작성, 인적 사항(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은 작성 필수
-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글자크기 : 11, 글자체 : 맑은고딕, 줄간격 : 120%)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 작성 금지
- 학력, 경력, 자격증, 시험성적 등 작성 금지
- 작성 금지사항을 기입할 경우 탈락 등 불이익 조치 가능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서식 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00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 고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온라인 발급 방법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접속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일하는 삶에 안심과 안정을 드리는,

근로복지공단

대표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관련 소식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홈페이지입니다.

[바로가기](#)

고용·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고용·산재보험 관련한 각종 민원을 신청(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바로가기](#)

근로복지넷

각종 근로자 복지사업 (생활안정자금, 임금채권사업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바로가기](#)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바로가기](#)

공단 병원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사이트입니다.

[바로가기](#)

우편번호 [44288]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통화로 발신자 부담) • Copyright © 2023 by 근로복지공단 All Rights Reserved.

② 개인 → 일반근로자 선택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이용 로그인

☐ 키보드보안프로그램 적용 ①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키보드보안프로그램 적용을 권장합니다.

사업장

사무대행

의료기관

개인

☒ 일반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산재근로자 ☐ 대리인(간이대지급금/심사청구/구상금협의조정/최초요양금신청)·유족

주민등록번호

123456

.....

☒ 개인정보이용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

공동인증서 로그인

간편인증 로그인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간편인증(주민등록번호)으로 로그인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어 간편인증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간편인증 사업자: 카카오톡,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신한은행, 네이버, 토스, 뱅크샐러드, 하나은행, 농협, 드림인증
 - 간편인증 요청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간편인증 화면의 안내문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서암호는 주기적으로 변경 관리하시고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개의 사업장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별도의 구분없이 모두 사용이 가능하니 관리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반드시 로그아웃 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약 60분 동안 화면 이동이 없을 경우 자동 로그아웃됩니다.)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발급하시려면 개인 > 일반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선택 후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 토탈서비스는 모바일 환경(모바일 웹, 앱)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③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선택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사업장 사무대행기관 의료기관 **개인**

[일반근로자] 박정연 님 민원접수/신고 정보조회 전자통지 증명원 신청/발급 업무상질병판정 심사청구

자주 찾는 서비스

토털서비스 이용안내서 다운로드

개인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개인별 부과고지보 험료 조회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

심사청구서 작성

공지사항

+ 알림창

연간 정기작업으로 인한 토털서비스 일시중지 계획 알림(2025.01.04)

산재보험 화상인증의료기관 (재)인증 결과 알림

(겨울철 비상진료 한시적용-대상기관) 산재보험 적용 대상 의료기관 안내

(겨울철 비상진료-한시적용) 겨울철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재보험 적...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 원

월 환산액 **2,096,270** 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50

최저임금위원회

④ 보험구분 중 '고용' 선택 → 조회구분 중 '상용' 선택 → 조회

⑤ 직종포함여부 '예' 선택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전체 이력 인쇄)' 신청 선택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Home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메뉴숨김 화면인쇄 화면인쇄 안내

+ 마이메뉴 추가

*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본 자료는 고용산재보험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경력증명 또는 타기관 제출 등 고용산재보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보험구분 ☐ 산재 ☒ 고용

· 조회구분 ☒ 상용 ☐ 일용

조회

이력내역서 발급

직종포함여부 ☒ 예 ☐ 아니오

① 내역서 발급을 위해서는 위의 [자격관리 상세이력]에서 해당 이력을 선택 하셔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개별사업장)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개별사업장 이력 인쇄

신청 메일전송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전체 이력 인쇄

신청 메일전송

고용/산재보험 선택 사업장 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선택 사업장에 대한 이력 인쇄

신청 메일전송

⑥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예시)

☐ 산재보험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피보험자용)					
발급번호	0000-2025-01		발급일자	2025년 월 일	접수번호 0000-2025-7
신청인	성 명	○○○		생년월일	0000 년 00월 00일
조회기간	전체 (조회기간 총 2개 이력 중 2개 이력 선택 발급 요청)				
일련번호	직종명(코드)	사업장 명칭	취득일/전근일	상실일	비고
1	정부·공공 행정 사 무원(025)	국무조정실	2024-09-02		근로자
2					근로자
※ 본 자료는 산재보험·고용보험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근로자/피보험자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경력증명 또는 타기관 제출 등 산재보험, 고용보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증명원은 근로복지공단 방문 없이 시·군·구 및 읍·면·동 민원실과 금융기관 및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장소는 정부24에서 확인 가능) - 발급 증명원의 진위여부 확인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국민소통-민원/조회-증명원 진위확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자격내역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정책제안서

지원 분야		성 명		연락처		e-mail	
----------	--	-----	--	-----	--	--------	--

제 목	청년이 보는 00 정책 ※ 청년정책 뿐만 아니라 지원한 분야의 정책·사업·제도(예: 복지, 노동, 산업, 금융 등)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제안 작성
제안 배경 및 문제점(현황)	
개선안 또는 정책대안	
예상 효과	

○ 정책제안서 작성요령

-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글자크기 : 11, 글자체 : 맑은고딕, 줄간격 : 120%)
- 지원한 기관의 주요 정책 중 청년의 시각에서 느낀 문제점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작성
- * 기관 업무에 대한 관심도와 정책참여 의지를 보기 위한 것으로,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 명	생년월일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성명 : (서명)

경기도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 귀하

붙임 4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면접대상자에 한해 제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청년인턴 채용 서류심사표

응시번호			성명	
------	--	--	----	--

평가 항목	위 원 평 정		
	우 수	보 통	미 흡
1. 지원동기 및 진로 계획 (25점)	(25점) 진로 계획과의 연계가 명확하고 기관에 대한 이해 및 진정성 뚜렷	(15점) 직무·기관에 대한 이해는 있으나 진정성과 진로 연계성 부족	(5점) 기관·직무와 관련성 없는 지원 동기이며 관심이나 목적이 불분명
2. 직무 관련 역량 및 경험 (25점)	(25점) 직무 전문성이 구체적 사례를 통해 충분히 확인됨	(15점) 관련 분야 역량이 일부 확인되나 구체성 부족	(5점) 직무 관련 경험이나 전문성 확인 불가
3. 문제해결력 및 도전정신 (15점)	(15점)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핵심 원인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해결함	(9점) 문제나 어려움을 인지했을 때 일반적인 수준에서 해결책을 찾고 실행하였음	(3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나 도전적인 시도가 드러나지 않음
4.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10점)	(10점) 팀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합의를 도출해 탁월한 성과 창출	(6점) 팀 활동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며 협업함	(2점) 협업 경험이 없거나 소극적이고, 갈등해결 노력 미흡
5. 성실성 및 참여 의지 (25점)	(25점) 인턴 경험에 대한 높은 참여 의지와 성실성이 명확하게 드러남	(15점) 기본적인 수준의 책임감과 의지가 확인됨	(5점) 불성실한 응답 작성, 성실성이나 참여 의지가 거의 드러나지 않음
6. 가 점 (3~10점)	국가유공자, 장애인, 취약계층 등 취업지원 대상 (취업지원대상자(5~10), 장애인(5), 저소득층(3))		점
총 점			점

※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 :

(서명)

청년인턴 면접시험 종합평가표

응시번호		성명	
------	--	----	--

평정요소	세부 내용	배점	위 원 평 정			
			우수	다소 우수	다소 미흡	미흡
1. 참여의지 및 진로 연계성	인턴 활동에 대한 관심과 열의, 진로 계획과의 연계 정도	20점	(20)	(15)	(10)	(5)
2. 직무 이해도 및 전문성	기관 및 직무에 대한 이해 수준, 전문성 확보 여부	20점	(20)	(15)	(10)	(5)
3. 정책제안의 참신성 및 실현가능성	정책제안서의 문제 인식,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 가능성	20점	(20)	(15)	(10)	(5)
4. 의사소통능력 및 태도	질문에 대한 응답의 명확성, 면접 태도	20점	(20)	(15)	(10)	(5)
5. 공직에 대한 책임감 및 윤리의식	공무수행에 대한 태도, 책임감, 공정성 등 자세	20점	(20)	(15)	(10)	(5)
6. 가 점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 취업지원 대상	배점 외				
총 점			점			
※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가 필요한 경우, 총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함

※ 평정 요소별 배점 범위 내에서 채점 가능(40점 이하인 경우 불합격 처리)

심사위원 :

(서명)

서 약 서

본인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청년인턴 채용 _____전형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는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3.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으로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의 회피를 신청한다.
4. 기타 공정한 시험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본인은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향후 고용노동부의 심사위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제반 보안사항 유출 등 채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관련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 귀하

근로계약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이하 “사용자”라 함)과(와) _____(이하 “청년인턴”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26년 월 일부터 2026년 월 일까지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무 내용 :

※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년인턴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휴게시간: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4.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로 한다.

5. 보수

○ 보수는 2,156,880원(정액급식비 160,000원 포함)과 그 밖의 법정수당(연장근로 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 보수는 매월 25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에 지급한다(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로 한다)

○ 지급방법 : 청년인턴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은행명: _____ 예금계좌번호: _____)

6. 연차유급휴가

○ 1개월 개근 시 월 1회 유급 휴가 부여한다.

※ 공가 및 기타 휴가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7. 사회보험 적용여부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8. 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계약해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하고, 해지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 ※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근로기준법」 제23조)
 - ▶ 관리자의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수차례 위반하였을 때
 - ▶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케 한 때
 - ▶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 ▶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 ▶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 받았을 때
 - ▶ 부서장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근무장소 이탈을 반복하는 등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때
 -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9. 기 타

-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6년 월 일

(사용자)

기관명: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주 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44번지 73 (전화번호: 031-463-7386)

대표자: 최종수 (서명 또는 인)

(청년인턴)

주 소:

연락처:

성 명: (서명 또는 인)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확인>

교 부 일 시: 2026. . . 수 령 자: (서명)